

「평창군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05월 26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1년 06월 10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6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1년 06월 1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유통산업과장)

가. 제안이유

봉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건립된 봉평문화복지센터 운영 재개(평창군 직영)에 따른 시설 이용료 등 징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평창군 봉평문화복지센터의 관리,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운영일, 이용료 및 운영방법 (안 제5조 내지 제8조)
- 위탁운영 근거, 수탁자 선정 및 수탁자의 의무(안 제11조 내지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현진)

○ 본 조례안은

우리군 봉평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목적이 있으며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관리 및 운영의 주체를 군수로 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가능

안 제5조부터 제10까지는 이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수탁자 선정·의무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는 군수의 수탁자 지도감독 사항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 “봉평문화복지센터”는

봉평면주민주식회사가 ‘17년 11월 30일 협약일을 시작으로

’21년 2월 10일 해지까지의 기간 동안 운영해 오던 것으로

’21년 3월 20일 군 직영으로 운영이 재개되면서

본 조례안에 센터 운영의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센터 운영의 주요시설은 목욕탕, 체력단련실, 동아리실, 소극장, 회의실입니다.

○ 조례안의 센터 운영은 군 직영을 원칙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조례안 [별표1] 이용 요금은

동아리실/소극장/회의실은 10,000원(1시간), 15,000원(2시간), 30,000원(4시간)

목욕탕 이용 요금은 어른 5,000원, 어린이/노인 3,000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 목욕탕 이용 요금과 관련하여서는

전국적으로 우리군처럼 직영으로 운영하는 공공목욕탕의

조례상 이용 요금을 아래표와 같이 비교하였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7곳 지자체 입법례를 비교했을 때,

어른기준 요금은 평균 2600원으로 확인됩니다.

※ 타 시·군 “공공목욕탕 운영 조례” 상 이용요금 비교 (단위: 원)

시 설 명	이 용 료		
	어 른	어린이(미취학 아동)	노인
조례안	5,000	3,000	3,000
당진시 행복목욕탕	3,000	2,000	2,000
동해시	북평목욕탕	3,000	2,000
	무릉복지회관	2,000	1,500
고창군 작은목욕탕	2,000	1,000	1,000
순창군	2,000	면제	1,000
완주군	2,000	1,000	1,000
보령시 목욕탕	4,000	3,000(만 12세 이하)	3,000
장수군 작은목욕탕	3,000	1,500	1,500
봉화군 작은목욕탕		2,000	
진안군 작은 목욕탕	2,000	1,000	1,000
춘천시 작은목욕탕	2,000	1,000	1,000
부산 금정구	3,000	2,000	
세종 작은 목욕탕	3,000	2,000(13세 이하)	1,000
양평군	2,000	1,000(13세 미만)	
울주군	4,500	3,500	
김제시	2,000	1,500	1,500
부안군	3,000	2,000	2,000

○ 이용요금 외 기타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관계법령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함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